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67호. 1998. 4. 17.

주요 골자

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에는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국민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의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정함.

라. 수익의 귀속시기 특례를 인정받는 조합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추가함

개 정 이 유

국민주택의 분양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8. 4. 10. 법률 제5,534호)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회보